

## 光州直轄市西區一般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案審查報告書

1992. 12. 22

社會產業委員會

### 1. 審查經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11月 24日. 西區廳長 提出

나. 回附日字 : 1992年 11月 24日 回附

다. 上程日字 : 第20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定期會)

第10次 社會產業委員會(1992. 12. 22) 上程議決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清掃課長 姜宇鉉)

가. 提案理由

- 既存 廢棄物 管理法에서 廢棄物 管理法과 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로 全文이 改正되어,
- 一般廢棄物 處理等의 業務가 區廳長 固留業務로 됨에 따라 改正된 法에 適合하도록 制定코자 함.

나. 主要骨子

- 一般廢棄物 管理 區域의 除外地域 指定 (第4條)
- 一般廢棄物 處理의 代行 및 蒐集·運搬規定 (第5條)
- 一般廢棄物 蒐集·運搬處理 方法 (第6條)
- 多量排出者에 對한 措置 (第7條)
- 아파트等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 處理 (第8條)
- 一般廢棄物 保管施設等의 設置 (第9條)
- 一般廢棄物 蒐集·運搬處理 手數料 賦課徵收 (第12條)
- 手數料 減免 (第16條)
- 過怠料의 賦課 基準 및 節次 (第19條)
- 權限委任 (第22條)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요지

(專門委員 : 廉九烈)

- 쓰레기 分離收去 等으로 쓰레기의 排出量을 줄이는 한편 아울러 마구 버리는 行爲를 豫防하므로서 環境汚染을 막고 清潔維持에 寄與하게 되므로 制定하여 施行함이 妥當함.

### 4.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答 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率根 委員長</li> <li>- 共同住宅의 쓰레기 投入口는 閉鎖하고 新築 共同住宅 投入口는 設置하지 아니한다는 法的根據는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清掃課長 姜宇鉉</li> <li>- 法的根據는 없고 環境處에서 建設部에 法令改正 要求中에 있으며 本條例案 制定 公布時 建築課에 通報 施行토록 措置하겠슴.</li> </ul>

### 5. 討論要旨

없 습

### 6. 審査結果

原案可決

### 7. 少數意見의 要旨

없 습

### 8.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습

##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예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광주직할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위생적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청결유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가 성실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속에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은 적판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하여 수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2 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5조(일반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동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및 최종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㉖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㉗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 한 지급한다.

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① 구청장은 매년 일반폐기물 감량·재활용품 수집·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주지시키고 동계획에 적합하게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운반을 지역별·계절별·성상별·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등을 요일별로 지정하고 수거 일정표를 각 가정에 사전 배부하여 무작토록 하여야 한다.

- 제 7조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영 제 6조의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을 자가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을 영 제 7조,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 별지 제 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중 위탁처리를 요구하는 신고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영 제 7조 관련 별표 2 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기준 1호가목의 기준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 ④ 다량배출자에 대하여는 제 12조에서 규정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시 조례 제 5조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요금징수규정 요금의 범위내에서 다량배출자와 상호 협약하여 결정하고 위탁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영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신고자가 사정의 변화로 다량배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사실여부를 확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구청장은 다량배출 신고해지사항을 세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영 제 6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배출된 일반폐기물(건축잔재물등)을 매립하기 위한 전용매립장을 조성 운영 할 때에는 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전용매립장을 구청장이 조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 매립장 조성에 적합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매립장 설치 허가를 득하여 운영토목 앞선 권유 할 수 있다.

제8조(아파트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 ① 구청장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밀집지역,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일반폐기물 집적소가 협소하거나 지하에 위치하는등 수집여건이 특이하여 별도의 장비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자체수집·운반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영세민거주용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제16조 수수료 감면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수집·운반업자에게 보조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일반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가연성 일반폐기물, 불연성 일반폐기물 재활용성 일반폐기물로 구분 보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종이류와 병류, 캔류, 플라스틱등을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 하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용기는 소각공장 건설 후부터 실시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때에는 규칙 제10조 별표6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보유하고 있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투입구는 폐쇄조치하고 신축 공동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입구를 가연성·불연성으로 2조이상 설치하고 하부저장조에 투입구별로 보관용기를 1㎡ 이상을 설치하여 수거·운반차량의 수거작업시 쓰레기만 또는 보관용기 전체를 압둘카·압축차등으로 용이하게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설치 가능하나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시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조 (공중용 쓰레기용기설치및 관리)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및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일반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일반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일반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등을 협의 설치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11조 (일반폐기물 적환장)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쓰레기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 할 수 있다.

-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원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 하는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④ 이동식적원장(콘테이너)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⑤ 적원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를 지정 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 ⑥ 적원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제 3 장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

제12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산세 또는 건물연적, 토지연적, 가족수에 따라 부과하며 재산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과대상은 유사 부과대상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건축물단위로 수수료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내의 각업종별 세대별로 정액을 산출 합산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제13조(수수료 납기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지역별로 20일,말일,익일 10일중 택일하여 정하며, 그 징수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 될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15일 이상일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일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 관리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여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자체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납기전 징수)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 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업소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미납수수료 납부이행)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 또는 새로이 점유한 자는 전소유자의 수수료 미납여부를 확인 정산  
하여 수납기관에 직접납부 또는 납부보통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직할시 및 산하기관의 공용 또는 공공건물 시설
4. 통·반장

제17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수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에서 적환장을 통하여 보관  
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 제 4 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보고·검사

제18조(보고·검사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관련사업자에 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및 유지관리 실태
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
5.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 허가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 5 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및 절차) ① 법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법, 영, 규칙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에 의한다.

제20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규칙 제82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 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피처분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6 장      업무의 위임위탁

제22조(권한 위임) 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3. 제12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법인·단체 기타 관리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